의안번호	2217052
의 뢰 인	임호선의원
회 답 일	2026.9.2.
추계번호	26D1115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29조(임시조치)제1항	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·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29조(임시조치)제1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(안 제29조 제1항)

○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추가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건수 증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전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된 2026년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전자감독 예산 내역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세부사업	예산
전자감독	전자감독·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	11,212
	전자감독·신상정보 등록 운영	6,940
	장치 및 시스템 개선	17,865
	사업지원경비	1,249

자료: 법무부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

○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퇴거 등 격리(제1호),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(제2호)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제3호),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(제4호),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(제5호), 상담위탁(제6호)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

○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임시조치로 신설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○ 참고로,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체 임시조치 결정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연도별 임시조치 결정 건수: 2021~2025년

(단위: 건)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임시조치 결정	9,625	10,863	12,782	14,791	19,267

자료: 대법원

❑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